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2024. 4.

본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전형별 일정, 전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

### 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주간	야간	합계
초등교육과	526명	0	526명

### 2.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명		정원 구분	모집인원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정원 내	225명	
	지역균형 특별전형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110명	
	기회균형 특별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4명	
		학생부종합(저소득층학생전형)		18명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정원 외	21명	
		학생부종합(장애인학생전형)		20명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전형)		3명	
소 계				401명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수능(일반학생전형)	정원 내	173명 <sup>1)</sup>	
	기회균형 특별전형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정원 외	7명	
	특별전형	기타(탈북학생전형)		3명	
소 계				183명	
합 계				584명	

1) 2024학년도 정시모집 등록포기자 4명 이월 인원 포함

※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저소득층학생전형), 학생부교과(학교장 추천전형】의 최종 등록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정시모집 정원 내 수능(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선발함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성비 적용 선발하지 않음

## 1.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원 자격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ul>
지역균형 특별전형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지원가능,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일반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영재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일반고 대안교육 위탁과정,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추천인원 제한 없음</li> </ul>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li> </ul>
	학생부종합 (저소득층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li> </ul>
기회균형 특별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중·고교 조기졸업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부,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li> <li>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li> </ul> </li> </ul> </li> </ul> </li> </ul>
	학생부종합 (장애인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상이등급자</li>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이등급자</li> </ul> </li> </ul>
	학생부종합 (서해5도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li>-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ul> </li> </ul>

## 2. 수시모집 평가 방법

### ◆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

전형	선발 방법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			비고
			서류 평가	학생부 교과	면접 평가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	일괄 합산	100%	-	70% (700점)	30% (3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설정 (4개 영역 등급 합 14등급 이내)</li> <li>비대면 면접평가</li> </ul>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전형)	일괄 합산	100%	100% (1,000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li> </ul>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특별전형	일괄 합산	100%	100% (1,000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형자료에 답변 녹화 동영상 추가</li> </ul>

####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4개 영역을 반영함  
(탐구 영역은 응시 과목 중 상위 등급 1개 과목을 반영함)
- 한국사 영역 응시 필수
-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직인성 평가를 위한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전형자료로 활용함

◆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구 분	내 용																																																						
반영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5학기, 졸업자의 경우 6학기 반영																																																						
반영과목	반영학기 내 석차등급 및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																																																						
가중치여부	학년별·교과유형별·과목별 가중치 없음																																																						
점수산정방식 및 배점구간	<p>*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목별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를 대학 자체 교과성적 환산 점수로 변환</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9">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th> </tr> <tr> <th colspan="2">석차등급</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성취도</td> <td>3단계 평가</td> <td>A</td> <td>-</td> <td>B</td> <td>-</td> <td>C</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단계 평가</td> <td>A</td> <td>-</td> <td>B</td> <td>-</td> <td>C</td> <td>-</td> <td>D</td> <td>-</td> <td>E</td> </tr> <tr> <td colspan="2">환산점수</td> <td>8</td> <td>7</td> <td>6</td>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body> </table> <p>         · 교과성적 환산점수 = <math>600 + \{ \text{석차등급 및 성취도 환산점수 평균}(\textcircled{\text{O}}) \} \times 50</math>          · 석차등급 및 성취도 환산점수 평균(<math>\textcircled{\text{O}}</math>)  <math display="block">= \frac{\sum (\text{교과목별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환산점수} \times \text{교과목별 이수단위수})}{\sum (\text{교과목별 이수단위수})}</math> </p>	구분		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성취도	3단계 평가	A	-	B	-	C	-	-	-	-	5단계 평가	A	-	B	-	C	-	D	-	E	환산점수		8	7	6	5	4	3	2	1	0
구분		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성취도	3단계 평가	A	-	B	-	C	-	-	-	-																																													
	5단계 평가	A	-	B	-	C	-	D	-	E																																													
환산점수		8	7	6	5	4	3	2	1	0																																													

### 3. 기타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1호~9호) 반영(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검정고시자 포함)

- 수시모집 전체 전형: 평가 시 부적격 처리

### III

## 정시모집 전형별 주요사항

### 1. 전형별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수능 (일반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한 자</li> </ul>
기회균형 특별전형	수능 (저소득층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li> </ul>
기타 (탈북학생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탈북학생</li> </ul>

### 2. 정시모집(수능위주) 평가 방법

#### ◆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

모집시기	전형	선발방법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반영 점수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성적	
정시모집 「나」군	수능(일반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100%	100% (1,000점)	없음

※ 수능(일반학생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반영 영역	활용 지표	반영 비율	반영 점수	반영 방법	비고
국어	백분위	25%	250점		반영 영역별 별도의 지정 선택과목 없음
수학	백분위	25%	250점	■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해당 백분위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단, 수학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영어	등급	25%	250점	■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사용	
탐구	백분위	25%	250점	■ 탐구영역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 반영	
계		100%	1,000점		

※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일반학생전형)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및 탈북학생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제2외국어·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 영어 영역: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부여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일반학생전형)	환산점수	100	95	90				-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한국사 영역: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은 수능 반영점수(1,0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 감점

구분	등급	1	2	3	4	5	6	7	8	9
수능(일반학생전형)	감점	0	0	0	0			-		
수능(저소득층학생전형)		0	0	0	0	-2	-4	-6	-8	-10

### 3. 정시모집(기타-탈북학생전형) 평가 방법

#### ◆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

전형	선발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비고
			수능성적	면접평가	
기타(탈북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1,000점)	-	100% (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

### 4. 기타사항

#### ◆ 학교폭력 조치사항(1호~9호) 반영(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검정고시자 포함)

- 정시모집 전체 전형: 평가 시 부적격 처리